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신동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창진, 도문열, 박 석,
신복자, 유만희, 윤기섭,
이민옥, 이병도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원형,
이종환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정기적 안부확인, 심리상담 치료 등의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 물품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고독사예방법」과의 통일성을 위해 ‘고독사 정의’ 개정 (안 제2조 제1호)
- 나.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‘사회적 고립 예방’ 포함 (안 제3조제2항)
- 다. 고독사 예방 사업 강화를 위한 물품, 바우처 등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7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예방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고독사“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제3조제2항 중 “고독사 현황”을 “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
회적 고립가구 현황”으로, “고독사 발생”을 “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
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독사”를 “고독사·사회적 고립”으로
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위험자”를 “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”로 하고, 같은 조
제4호 중 “지원”을 “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 중 “주민모임”을 “공간 및 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은
항 제7호 중 “제공사업”을 “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
돌봄서비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의”를
“생애주기별”로, “일자리”를 “일자리, 사회참여 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
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
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단체”를 “단체 · 개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3조(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·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고독사”란 「<u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</u> ---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<u>고독사·사회적 고립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
1. 2. (생략)
3.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6.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
7.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
8. ~ 10. (생략)
11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,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

제6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----- 위
협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
4. ----- 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-----

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 공간 및 프로그램 -----

7. -----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
8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생애주기별 -----

-- 일자리, 사회참여 프로그램 -----
랩 -----
--

12. · 13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및 기관·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12. · 1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④ -----
----- 단체 ·
개인 -----

-----.

⑤ 제4항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제1항 및 제3항	○	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등 고독사·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사업 비용 발생 ⇒ 총비용 2,800,000천원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고독사·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사업 비용(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)
 - 사회적 고립예방 참여프로그램
 - 지원거부가구 사회참여 유도
 - 사회적 교류공간 운영

나. 전제

- 사회적 고립예방 참여프로그램
 - ① 외로움 예방 민간협업 챌린지
 - (프로그램) 20,000천원으로 전제
 - (시행횟수) 10회를 전제
 - ※ 매년 동일 조건을 전제
 - ② 사회참여 활동 인센티브
 - (대 상 자) 2,400명으로 전제
 - (지원금액) 120천원을 전제
 - ※ 조정지수 0.5를 반영하여 추계하며 매년 동일을 전제
- 지원거부가구 사회참여 유도 - 사회복지관 서울안녕 적립금
 - QR코드 스캔을 하면 일정금액(1일 1,000원, 월 최대 30,000원) 적립을 통해 매월1) 지급
 - (대 상 자) 750명2)로 전제(매년 동일을 전제)
 - (지원금액) 30천원을 전제
 - ※ 조정지수 0.5를 반영하여 추계하며 매년 동일을 전제

1) 10개월을 기준으로 추계

2) 월 이용인원 15명 × 50개소

○ 사회적 교류공간 운영

① 고립 위험가구 발굴 및 공간 이용 유인 위한 간단한 식음료 제공

- (단 가) 4천원으로 전제
- (이용인원) 120명(일 이용인원 30명, 4개소)을 전제
- (기 간) 200일을 전제
- ※ 매년 동일 조건을 전제

②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교류공간 조성

- (조성비용) 10,000천원으로 전제
- (공 간 수) 4개소를 전제
- ※ 매년 동일 조건을 전제

○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

- 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
○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복지실 관련부서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**2,800,000천원**(연평균 56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사회적 고립예방 참여프로그램 (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)	346,000	346,000	346,000	346,000	346,000	1,730,000
	자원거부가구 사회참여 유도 (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)	110,000	110,000	110,000	110,000	110,000	550,000
	사회적 교류공간 운영 (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)	136,000	96,000	96,000	96,000	96,000	520,000
	소계(a)						2,800,0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592,000	552,000	552,000	552,000	552,000	2,800,000

주 : 서울시 복지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고독사·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사업 비용(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)
 - 사회적 고립예방 참여프로그램
 - 지원거부가구 사회참여 유도
 - 사회적 교류공간 운영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**2,800,000천원**(연평균 560,000천원)

$$\sum_{i=1}^5 (\text{①사회적 고립예방참여프로그램 연평균비용} + \text{②지원거부가구사회참여 유도사업 연평균비용} + \text{③사회적 교류공간운영 연평균비용})_i$$

i = 비용추계 연차(2025년~2029년)

나. 연평균 비용 = **560,000천원**(① + ② + ③)

$$= 346,000\text{천원} + 110,000\text{천원} + 104,000\text{천원}$$

① 사회적 고립예방 참여프로그램 연평균 비용

$$= 346,000\text{천원} (\text{a} + \text{b})$$

$$= \text{챌린지 추진 관련}(\text{a}) + \text{인센티브 관련}(\text{b})$$

$$= 200,000\text{천원} + 146,000\text{천원}$$

ⓐ 외로움 예방 민간협업 챌린지 추진사업 연평균 비용

$$= 200,000\text{천원}$$

$$= \text{프로그램 단가}(P) \times \text{시행횟수}(Q)$$

$$= 20,000\text{천원} \times 10\text{회}$$

⑥ 사회참여 활동 인센티브 연평균 비용

$$= 146,000\text{천원}^3)$$

$$= \text{지원비}(P) \times \text{지원대상}(Q) \times \text{조정지수}$$

$$= 120\text{천원} \times 2,400\text{명} \times 0.5$$

② 지원거부가구 사회참여 유도 - 사회복지관 서울안녕 적립금 연평균 비용

$$= 110,000\text{천원}^4)$$

$$= \text{지원비}(P) \times \text{지원대상}(Q) \times \text{기간}(T) \times \text{조정지수}$$

$$= 30\text{천원} \times 750\text{명} \times 10\text{개월} \times 0.5$$

③ 사회적 교류공간 운영 연평균 비용 = 104,000천원⁵⁾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교류공간 조성 비용	40,000	-	-	-	-	40,000
	○ 식음료 제공비용	96,000	96,000	96,000	96,000	96,000	480,000
□ 총 비용		136,000	96,000	96,000	96,000	96,000	520,000

○ 교류공간 조성 연평균 비용(1차년도 발생)

$$= 40,000\text{천원}$$

$$= \text{공간조성비}(P) \times \text{장소}(Q)$$

$$= 10,000\text{천원} \times 4\text{개소}$$

○ 간단한 식음료 제공 연평균 비용(매년 발생)

$$= 96,000\text{천원}$$

$$= \text{단가}(P) \times \text{대상}(Q) \times \text{기간}(T)$$

$$= 4\text{천원} \times 120\text{명} \times 200\text{일}$$

3) (서울시 관련부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) 144,000천원 ≒ 146,000천원

4) (서울시 관련부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) 112,500천원 ≒ 110,000천원

5) 5년 총소요 비용을 나누어 구한 금액(520,000 ÷ 5)